

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7월 27일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6년 7월 13일

나. 제출인 : 안병국 의원 등 5인

다. 회부일자 : 2026년 7월 13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3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

•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6. 7. 27.) 상정 · 질의답변 · 토론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의 규정(안 제3조)

○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인사청문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9조)

○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기간(안 제10조)

○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3조)

○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공개 및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
(안 제14조~제18조)

○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양기성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검토 결과 상위법령 위배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청문 요청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,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단체장의 임용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

- 인사청문요청안을 임명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
 - 단체장에게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의회에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후 처리하는 시기만 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추후 보완하겠음
- 조례안 제6조(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)에 직무수행계획서도 포함할 것을 제안함
 - 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이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요청 가능할 것임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